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14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조경태·서천호·서일준

이헌승 • 박성민 • 조정훈

곽규택 · 김소희 · 김선교

김민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해당 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 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젊은 인구의 유출과 전국적 저출생 현상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하였을 때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(이하 "비수도권주택"이라 함)을 보유한 사람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조세특 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주택 한 채만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수 도권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몰기한 없이 「소득세법」 상의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려는 것임(안 제70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3(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 주택 1채(이하 이 조에서 "양도주택"이라 한다)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(양도주택과 행정구역상 같 거나 연접한 읍·면에 소재하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며, 이하 이조에서 "비수도권주택"이라 한다)를 보유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양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.

- 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과 비수도권주택 외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- ④ 비수도권주택 취득 확인 절차, 특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의
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70조의3(비수도권주택 보유자
	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	① 주택 1채(이하 이 조에서
	"양도주택"이라 한다)와 수도권
	외의 지역 또는 「지방자치분
	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
	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
	<u>구</u> 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<u>1</u>
	채(양도주택과 행정구역상 같
	거나 연접한 읍 • 면에 소재하
	지 않는 주택으로 한정하며, 이
	하 이 조에서 "비수도권주택"
	이라 한다)를 보유한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
	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양도주
	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수
	도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
	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
	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를
	적용한다.
	②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양도
	주택과 비수도권주택 외의 주
	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

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 호에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- ① 비수도권주택 취득 확인 절차, 특례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